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글로벌 멀티에셋30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2. 변경시행일 : 2020년 2월 7일

3. 변경사유

- ①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
- ② 위험등급 변경 : 4등급(보통 위험) → 5등급(낮은 위험)
- ③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
-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의무해지 등)

4. 변경사항

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2 조 (용어의 정의)	이 신탁계약에서 ___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내지 9. (생략) 10. "예탁결제원"이라 함은 법 제 29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. 11. (생략)	이 신탁계약에서 ___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내지 9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10. (현행과 같음)
제 9 조 (수익권의 분할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 한다. ② (생략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 10 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___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 내지 16. (생략) ② 내지 ④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___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내지 16. (현행과 같음) ②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
제 14 조 (수익자명부)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 에 위탁하여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

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예탁결제원은 ___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내지 2. (생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___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전자등록기관은 ___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___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5 조 (자산운용지시 등)</p>	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내지 ④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35 조 (상환금 등의 지급)</p>	<p>① 내지 ② (생략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___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___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제 45 조 (투자신탁의 해지)</p>	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내지 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내지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</p>

	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 50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	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 50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
제 49 조 (금전차입 등의 제한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있다. 1. 내지 2. (생략) <신 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있다. 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제 2 항으로 정하는 때
제 50 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 내지 ⑧ (생략) 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 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	① 내지 ⑧ (현행과 같음) 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 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(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)의 방법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
부칙	<신 설>	이 신탁계약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나. 투자설명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갱신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운용인력(운용현황) -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현황 -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- 재무정보 -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집합투자업자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

		-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추 가>	2020-02-07 - 신탁계약 변경 :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의무해지 등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판매수수료선취형과 판매수수료미징구형의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 : 약 1년 2개월	판매수수료선취형과 판매수수료미징구형의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 : 약 1년 3개월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단기대출(법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)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__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(이하 생략)	단기대출(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)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__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(이하 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 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(이하 생략) 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5.75%	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5등급(낮은 위험) 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 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4.44%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	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</p>	<p>(가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___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</p>	<p>(가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___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<p>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</p>	<p>투자금액 : 5억원</p>	<p>투자금액 : 2억원</p>

끝.